세종특별자치시의회

수신: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

제목: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 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임: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. 끝.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 원 식 의원 (서명 또는 인) 외 5명

(발의의원서명따로붙임)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【발의의원】

소 속	직	성 명	서 명
세종특별자치시 의회	의 원		
	의 원		
	의 원		
	의 원		
	의 원		
	의 원		
	의 원		
	의 원		
	의 원		
	의 원		
	의 원		
	의 원		

의안번호		272	21
의 경	결	2021.	
연월 역	길	(제	회)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발 의 자	김원식 의원 외 5명
발 의	2021. 5. 10.
연 월 일	2021. 5. 10.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김워식 의워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21 발의연월일: 2021. 5. 10.

발의의원: 김원식, 유철규, 손인수,

임채성, 이태환, 이재현

1. 제안이유

○ 의원 연구 모임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, 의정활동 증가 상황에 맞추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정비가 필요함

○ 의원입법 및 정책개발 등 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구성요건 완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연구모임 구성 시 7명 이내로 한정하던 내용을 개선함(안 제3조)

나. 의원의 연구모임 참여를 연 1개로 한정하던 조항을 삭제함(안 제 3조제3항 삭제)

다. 연구 모임 등록 제출기한 1월 10일 규정을 삭제하여 유연하게 운영 하고자 함(안 제6조)

라. 단서 조항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동비 추가 지원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제43조(붙임 1)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)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포함하여 7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, 의원이 아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"를 "포함한회원으로 구성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의원이 아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.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 중 "1월 10일까지"를 "첨부하여"로 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의정운영공통경비"를 "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"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연구모임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연구모임 활동비를 추가로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모임은 별지 제2

호서식의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른 연구모임 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연구모임 활동비 추가 지원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 기 통보하고, 의장은 그 결과를 연구모임에 통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① 연구모임은 의회 의	제3조(구성) ①
원(이하"의원"이라 한다) 3명 이	
상과 교수,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	포함한 회
7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,	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의원이
의원이 아닌 회원은 다음 각 호의	아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
사람 중에서 선임한다. <후단 신	중에서 구성한다.
<u>설></u>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의원의 연구모임 참여는 연 하	<u><삭 제></u>
나의 연구모임으로 한정한다.	
제6조(등록 등) ① 의원이 연구모임	제6조(등록 등) ①
을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	
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모	
임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	
의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<u>1월 10</u>	<u>첨부하여</u>
<u>일까지</u> 의회 의장(이하"의장"이라	
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8조(활동비 지원) 의장은 제6조제	제8조(활동비 지원) <u>①</u>
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<u>의정운영</u>	<u>의정운영공</u>
<u>공통경비</u> 에서 연구모임 활동비로	통경비 예산의 범위
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 한도액은	
500만원 이내로 하다 〈다서 시	다마 여구모

<u>설></u>	임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위하여
	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
	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.
<u> <신 설></u>	② 연구모임 활동비를 추가로 지
	원받고자 하는 연구모임은 별지
	제2호서식의 연구모임 활동계획
	서를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.
<u> <신 설></u>	③ 제2항에 따른 연구모임 활동계
	획서가 접수되면 의장은 지체 없
	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<u> <신 설></u>	④ 위원회는 연구모임 활동비 추
	가 지원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
	장에게 통보하고, 의장은 그 결과
	를 연구모임에 통지하여야 한다.

[붙임 1]

관계 법 령

☑ 지방자치법

제43조(의회규칙)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[붙임 2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본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

3. 미첨부 사유

○ 연구모임 구성 및 등록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

4. 작성자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 원 식 의원